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149 |
|----------|-----|

2019.03.15.(금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임영은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9년 2월 26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2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3월 8일

(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임영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옥수수 품종과 직무육성품종의 관리 및 승계기관으로 농산사업소를 추가하여 지정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옥수수 품종과 직무육성품종의 관리 및 승계기관에 신규로 농산사업소를 추가함(안 제6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전문위원 : 오문석)

- ‘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옥수수 품종과 직무육성품종의 관리 및 승계기관으로 농산사업소를 추가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적절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) 도지사는 품종보호출원이 인정된 경우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지사 명의로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 하여야 한다. 단, 옥수수 품종의 관리 및 승계는 농산사업소가 한다.

제6조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관리기관 : 농업기술원, 농산사업소
3. 승계기관 : 농업기술원, 농산사업소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<u>제6조(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)</u></p> <p><u>도지사는 품종보호출원이 인정</u> <u>된 경우 직무육성품종에 대하</u> <u>여 다음과 같이 도지사 명의로</u> <u>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을 설정</u> <u>등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관리기관 : 농업기술원</u></p> <p>3. <u>승계기관 : 농업기술원</u></p> | <p><u>제6조(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)</u></p> <p><u>도지사는 품종보호출원이 인정</u> <u>된 경우 직무육성품종에 대하</u> <u>여 다음과 같이 도지사 명의로</u> <u>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을 설정</u> <u>등록 하여야 한다. 단, 옥수수</u> <u>품종의 관리 및 승계는 농산사</u> <u>업소가 한다.</u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관리기관 : 농업기술원, 농</u> <u>산사업소</u></p> <p>3. <u>승계기관 : 농업기술원, 농</u> <u>산사업소</u></p> |

관 계 법 령

□ 종자산업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6. 22., 2016. 12. 27.>

1. 종자 및 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
2.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
3.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
4.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
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6. 22.>